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66
----------	-----

202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김영옥 의원 외 2명 (찬성 45명)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옥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내 헌혈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공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조례에 헌혈 공가 제도를 명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번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헌혈 시공가 활용 장려를 규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 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 (안 제4조의2 신설)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3. 6. 8. ~ 2023. 6. 12.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상당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헌혈 우선 참여 권장 관련(안 제4조의2)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참여) 조문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가 관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 헌혈 공가 활용 장려 등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신 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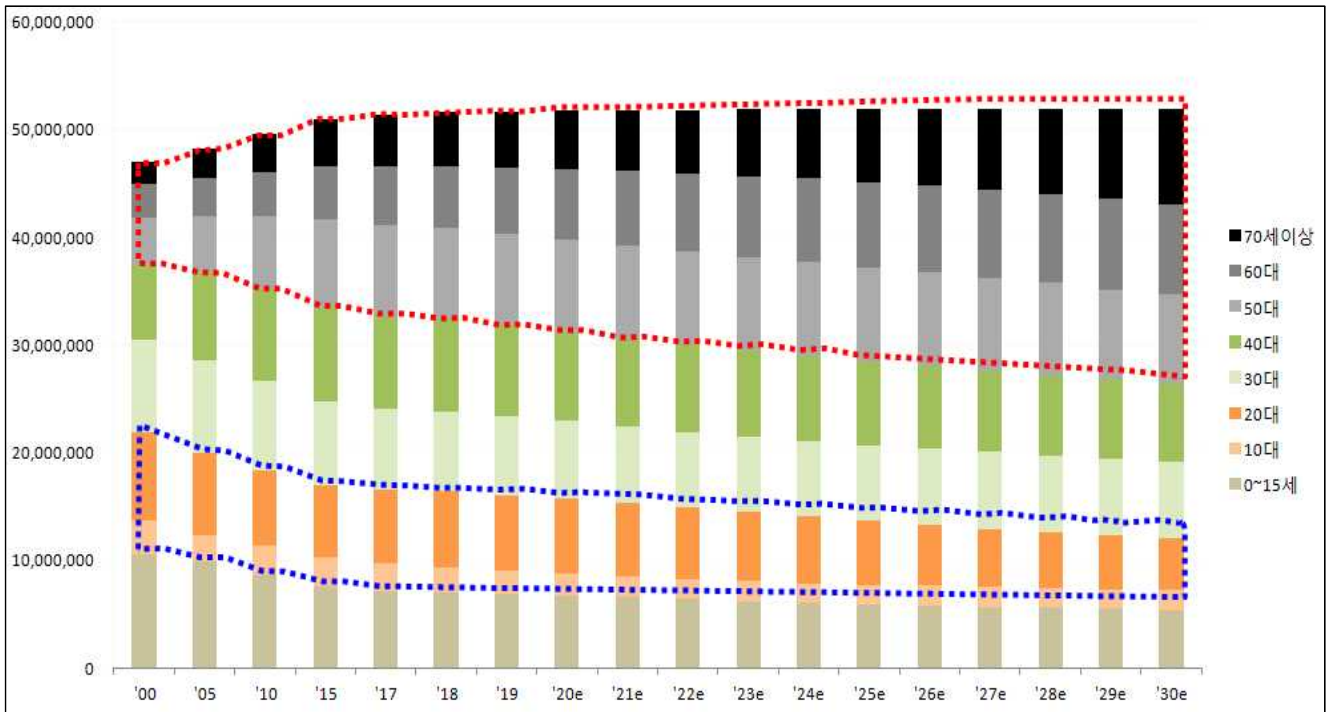
2)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된 헌혈 연령층인 10대~20대 인구(22년 기준 전체 헌혈 대비 54%(표1))가 줄어 혈액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헌혈의 주된 수요 연령층인 50대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혈액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표1]: 2022년 연령별 헌혈 현황¹⁾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건수	462,186	970,120	439,078	463,883	262,920	50,820	2,649,007
비율	17%	37%	17%	18%	10%	2%	100%

[표2]: 대한민국 중장기 연령대별 인구 변화²⁾>



- 이에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 왜냐하면 **혈액 공급 측면**에서 ① 혈액을 대신할 대체물질 또는 인공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②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③ 『혈액관리법』 제3조³⁾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1) 출처: 2022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혈액수급 현황 및 헌혈 증진 방안

3)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②항~④항 생략)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회 각 계층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가능하게 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

- 이와 더불어 **혈액 수요 측면**에서 보면 혈액은 여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써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임. 특히 **중증 외상 수술 등의 응급 수술을 받는 환자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 유지가 필수적**임에 따라 **수혈이 수술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현재 혈액 수급량은 **앞서 언급한 ‘수술 관련 헌혈 수요’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 특히 혈액암 환자 또는 백혈병 환자 등에게 필요한 **‘혈소판 성분헌혈4)’** 등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지정헌혈5)’**등으로 **직접 헌혈자와 혈액을 구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표3]: 2017년~2021년 지정헌혈 현황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정헌혈 (건수)	20,726 건	19,953 건	45,429 건	77,151 건	142,355 건

[표4]: 혈액부족으로 인한 지정헌혈 관련 기사

연번	기사 제목	언론사	날짜
1	"살고 싶으면 피 구해오라니 참 잔인하다"...'지정헌혈' 암환자 피눈물	머니투데이	23.5.10
2	[헬스컷] '혈소판 한 팩 200만원'... 피를 사고 판다고?	헬스조선	22.8.23
3	"피 직접 구해 오래요" 만삭 임신부는 피가 말랐다	한국일보	22.5.19

- 4) **헌혈의 종류**는 크게 1)전혈과 2)성분헌혈 두가지로 나뉨. 1)전혈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헌혈방식으로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전체를 채혈하는 방식임. 보통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혈은 원심분리 등을 통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등 여러 혈액 제제로 분리 제조되어 각 용도별로 환자에게 사용됨. 이에 반해 2)성분헌혈은 헌혈 당시부터 '필요한 성분 자체'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식임. 예를 들어 '성분채혈 혈소판'의 경우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임. **쉽게 말해, 전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전체 패키지로 헌혈하는 것이고 성분헌혈은 특정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헌혈하는 것임.**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설명 내용 재가공)
- 5) [지정헌혈]: 의료기관 및 환자가 지정 의뢰한 헌혈지원자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 후 그 혈액이 지정된 수혈자에게 수혈되는 헌혈. **쉽게 말해 헌혈하는 사람과 헌혈 받는 사람이 매칭·지정되어 있는 헌혈**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6) 출처: 2021년도 제5차 혈액관리위원회 및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 정책세미나 자료)

-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혈액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서울시 산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헌혈 공가 활용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및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본 조례(안)은 그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순서 개정사항’ 반영관련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법령 조문 순서 개정 사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4조 및 제4조의6</u> ----- ----- ----- ----- ----- -----.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제4조의3제1항</u> ----- ----- <u>제2조의3제2항</u> ----- ----- -----.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	제8조(-----) ① ----- ----- <u>제4조의6</u> ----- -----

<p>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⑤ (생략)</p>	<p>----- ----- ----- ----- -----.</p> <p>②~⑤ (현행과 같음)</p>
--	---

2)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법령 조문순서 개정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집행기관 의견 : 원안가결

- 본 조례 개정안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헌혈 공가 활용 장려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헌혈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3 종합의견

- [공공기관 헌혈 우선 참여 권장 관련] (안 제4조의2)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된 헌혈층인 10대~20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 따라서, 10대~20대 외 타 연령대의 헌혈 수급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수술 관련 헌혈 수요'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정도로 혈액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지정헌혈' 등으로 직접 혈액과 헌혈자를 찾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혈액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본 조례안은 그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 본 개정안은 현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조문순서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써 정확한 법령 인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6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영옥, 강석주, 유만희 의원(3명)
찬 성 자: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용균,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내 헌혈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공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조례에 헌혈 공가 제도를 명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 번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를 규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 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 (안 제4조의2 신설)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 및 제4조의6”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조 및 제4조의6 ----- ----- ----- ----- ----- -----.</p>
<p>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4조의3제1항 ----- ----- 제2조의3제2항 ----- ----- 3.~4.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p>

<신 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
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
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
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8조(-----) ①

----- 제4조의6 -----

②~⑤ (현행과 같음)